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 I. 제안경위

### 1. 이새날 의원 대표발의안

가. 제 출 자 : 이새날 의원 외 46명

나. 의안번호 : 제1013호

다. 제출일자 : 2023. 7.31.

라. 회부일자 : 2023. 8.21.

### 2. 이경숙 의원 대표발의안

가. 제 출 자 : 이경숙 의원 외 16명

나. 의안번호 : 제1326호

다. 제출일자 : 2023. 10.16.

라. 회부일자 : 2023. 10.23.

## II. 제안사유

### 1. 이새날 의원 대표발의안

-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판매 및 대여가 급증하는 등 이용수요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으나 어린이 보호, 사업의 종류 등 현행 조례로는 규정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고자 함

### 2. 이경숙 의원 대표발의안

-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와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여 이용안전을 증진하고자 함.

## III. 주요내용

### 1. 이새날 의원 대표발의안

- 가. 정의 규정을 정비하여 상위법령과의 체계 등을 정비함(안 제2조)
- 나.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의무를 반영함(안 제3조제2항)

- 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등 사고의 위험이 있는 지역을 통행하는 경우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제4항 신설)
- 라. 시장이 실시하는 사업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대여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신설함(안 제5조제1항제4호 신설)
- 마. 안전이용기준 마련시 이용자와 대여사업자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함(안 제7조제2항 신설)
- 바. 그 밖에 조례의 표현을 수정함

## **2. 이경숙 의원 대표발의안**

- 가. 이용자와 대여 사업자에 대한 정의 신설(안 제2조제2호, 제3호)
- 나. 안전운행, 주차질서 이행 등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 다. 안전장비 보관장치 설치, 이용자격 확인 등 대여 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 IV. 참고사항

### 1. 이새날 의원 대표발의안

가. 관계법령 : 「도로교통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23. 8.24.~ 2023. 8.28.

○ 제출의견 : 의견없음

라.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sup>1)</sup>

○ 제출의견 : 원안가결

-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을 강화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조례개정을 통해 이용자의 인식 제고와 대역 사업자의 안전관리 방안 마련을 유도함으로써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에 기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수용하고자 함

---

1) 보행자전거과-12327호(2023.8.24.) “의원발의 의안에 대한 의견 제출”

## 2. 이경숙 의원 대표발의안

가. 관계법령 :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23.10.26.~ 2023.10.30.

○ 제출의견 : 의견없음

라.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sup>2)</sup>

○ 제출의견 : 원안 가결

-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강조하고, 대여사업자가 안전한 이용환경을 자체적으로 조성하도록 하는 근거 신설하는 내용으로 원안동의함

---

2) 보행자전거과-165112('23.11.14.)-의원발의 의안에 대한 의견 제출

## V.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장훈)

### 1. 이새날 의원 대표발의안

#### 가.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인용을 통한 용어 정비와 ‘대여사업자’에 대한 용어를 신설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대여사업자’에 대한 지원과 안전이용규정 마련 시 이용자와 ‘대여사업자’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며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이용자의 의무를 신설하는 한편 조례상의 부자연스러운 표현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 나. 검토의견

##### ■ 용어 정의 관련(안 제2조제1호, 제2호 신설)

- 안 제2조제1호는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용어 정의<sup>3)</sup>를 인용하여 기존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3)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9의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또한, 안 제2조제2호는 “대여사업자”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해주는 사업자”로 새로이 규정하는 것으로 ‘공유형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한 용어 정의는 필요하다 할 것임

## ■ 시민 등의 책무 관련(안 제3조제2항, 제4항 신설)

- 안 제3조제2항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교통법」에 따른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고 통행방법<sup>4)</sup> 및 운전자의 준수사항<sup>5)</sup>등을 지키도록 동 조례 문구를 일부 수정하는 것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와 운전자 및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 안 제3조제4항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어린이 보호구역 등 사고의 위험이 있는 지역을 통행하는 경우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에게 안전운행 의무를 조례에 명시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할 것임

---

4)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 ‘자전거등’이란 법 제2조 21의2. “자전거등”이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

5)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 ■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계획의 수립·시행 등 관련(안 제4조제1항)

- 안 제4조제1항은 시민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계획(이하 “이용안전계획”이라 함)을 수립·시행하는 주체를 ‘시장’으로 정확하게 명시하고 기존 이용안전계획 수립·시행의 강제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수정하는 것임
- 동 조례에 이용안전계획을 수립과 시행하는 주체가 누락되어 있어 주체를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은 인정되나,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시장이 이용안전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을 기존과 동일하게 강제규정으로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 ■ 사업추진 등 관련(안 제5조제1항제4호 신설)

- 안 제5조제1항제4호는 시장이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 대상에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방안을 마련하는 대여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임
- 동 조례 제5조(사업추진 등)와 제10조(재정지원 등)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확보를 위해 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단체, 개인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미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조례에 별도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방안을 마련하는 대여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는 것은 자칫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방안을 마련해야하는 의무 당사자인 ‘대여사업자’에게 불필요한 시민 세금이 지원된다는 문제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문 신설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임

## ■ 안전이용기준의 마련 관련(안 제7조제1항 개정, 제2호 신설)

- 안 제7조제1항은 동 조례에서 사용한 ‘가이드라인’을 관련 법령6)에 따라 일반 시민이 알기 쉬운 용어인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이용기준(이하 이 조에서 “안전이용기준”이라 한다)’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 안 제7조제2항은 시장이 ‘안전이용기준’ 마련 시 이용자와 대여사업자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이는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안전이용기준’ 마련을 위해 필요하다 할 것임

---

6) 「국어기본법」 제14조(공문서등의 작성·평가)

① 공공기관등은 공문서등을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 하며,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

## 2. 이경숙 의원 대표발의안

### 가.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이용자와 대여사업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안전운행, 주차질서 이행 등의 이용자 준수사항, 안전장비 보관장치 설치, 이용자격 확인 등의 대여사업자 준수사항을 각각 규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실질적인 이용 안전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임

### 나. 검토의견

#### ■ 이용자와 대여사업자에 대한 정의 신설(안 제2조제2호, 제3호)

- 안 제2조제2호 및 제3호는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증가에 따라 ‘이용자’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 ‘대여사업자’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자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빌려주는 자로 각각 구분하여 정의하고 명확한 역할을 주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임

## ■ 이용자,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 규정(안 제12조 및 제13조)

- 안 제12조 및 제13조는 ‘이용자’ 및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
- 개인형 이동장치 국내시장 규모는 2017년 7.8만대, 2018년 14.3만대, 2019년대 17.3만대로 빠르게 증가하였고 현재까지 약 40만대 정도가 판매된 것으로 추정되며, 공유형 킥보드의 운영 대수는 2019년 25,970대에서 2021년 73,500대로 지속적으로 증가<sup>7)</sup>하고 있음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관련 사고 역시 2017년 117건에서 2021년 1,735건으로 14배 증가하였으며, 지난 2022년에는 26명이 사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된 바 있음<sup>8)</sup>

### ※참고1: 최근 5년간(2017~2021년) 연도별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현황

연도	2017	2018	2019	2020	2121
사고건수	117	225	447	897	1,735
증가율	-	92.3%	98.6%	100.6%	93.4%

7) 한국교통연구원-모빌리티전환 브리프('22.9) : 개인형 이동수단의 현황과 과제

8) '개인형 이동장치(PM) 교통사고 매년 급증'- 도로교통공단 보도자료('23.4.6.)

-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한 만 16세 이상만 이용이 가능하나 이를 위반한 미성년자의 무면허 이용과 대여사업자의 허술한 면허인증 절차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음<sup>9)</sup>

따라서 현행 자유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 공유업체에 대한 등록제로의 전환, 대여 시 운전자격 확인 의무화, 책임보험 가입 및 제재규정 신설 등 대여사업 관리를 위한 보완이 필요한 실정임

- 또한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개인형 이동장치 업체별 면허인증시스템이 미구축 되거나 인증을 강제하는 기능이 없는 등의 문제점 등이 발견된 바 있음

**※참고2: 업체별 면허인증시스템 운영현황<sup>10)</sup>**

연번	서비스명	면허인증시스템 구축 현황		
		시스템 구축	구축시기	비 고
1	스 윙	○	2021.5.	미성년자 대상 면허인증 강제
2	킵고잉	○	2021.5.	미성년자 대상 면허인증 강제
3	빔	X	-	회원가입 시 면허 보유 여부를 셀프 확인하도록 하며, 면허 미보유 체크 시 서비스 이용 불가
4	쌩쌩	○	2020.5.	미성년자 대상 면허인증 강제
5	지쿠	○	2021.5.	이용자 면허인증 강제 X

9) 끊이지 않는 전동킥보드 무면허 문제.. PM대여업 ‘등록제’ 고개-중도일보('23.5.21.)

10) 업체별 면허인증시스템 운영 현황-서울시 자료('23.10.)

- 동 개정조례안에서는 ‘이용자’는 「도로교통법」 11) 준수, 보호장구 착용 및 통행에 방해되지 않게 주차하도록 하고, ‘대여사업자’는 이용자의 안전장비 보관장치 설치 및 운영, 불법주차해결을 위한 주차장 및 거치대 설치 및 운영, 부적격자 이용방지를 위한 이용자격 확인, 배상보험 가입 등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환경 조성에도움이 될 것임
  
- 또한 현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는 동시에 교통 편의성을 도모하는 등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대안)」 12)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의결되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수요 증가와 관련하여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목소리가 계속되는 점을 감안할 때 동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볼 수 있음

---

11) ‘이용자도 보행자도 안전하게, 전동킥보드 관련 규정 강화’-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21.5.11.)

- 5월 13일(목)부터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강화된 도로교통법 시행
- 무면허 운전 10만원, 안전모미착용 2만원, 2인 이상 탑승 4만원 범칙금 부과
- 안전한 이용 문화 정착 위해 캠페인·교육 등 집중 홍보 및 단속 실시

12)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대한 법률안(대안)」 (’23.2. 국토교통위원장)

-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안(’20.9.18.),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안(’20.11.16.),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관리 및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22.11.14.) 대안